

세계경제 94-01

UR이후 亞·太경제협력의 과제와 韓國의 선택

유재원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序 言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世界經濟의 地球村化속에서 國內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制度 및 慣行의 國際化를 통한 競爭力 提高가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UR協商의 타결은 이러한 世界化 趨勢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심화를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內外 기업간 無限競爭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진취적 기업에게 새로운 挑戰의 機會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UR協商을 통하여 우리는 韓國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거나 세계경제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음을 한번 더 실감있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한된 영향력이나마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기르는 동시에, 多者間 國際協力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韓國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우기 최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내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經濟的 實益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本 研究는 UR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속에서 亞·太經濟協力の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비추어 韓國의 역할 및 정책기조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域內貿易自由化의 課題 및 問題點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多者間 貿易自由化에 따른 補完的 域內貿易自由化 및 貿易活性化의 추진이 향후 亞·太經濟協力の 實效性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研究報告書가 정책당국, 학계 및 관심있는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초청연구위원인 建國大學校 유재원 교수가

집필을 맡아 수고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원내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도움말씀을 주신 김광석 경희대 교수, 김기환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사장, 김만제 전부총리, 김완순 고려대 교수, 남종현 고려대 교수, 박진근 연세대 교수, 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 홍원탁 서울대 교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이 報告書의 모든 견해는 筆者個人的 것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6.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 공 일

目 次

要約	7
I. 序論	13
II. 亞·太經濟協力の 構想과 現況	
1. 亞·太經濟協力の 原動力	16
2. APEC과 亞·太經濟協力の 現況	18
3. 亞·太經濟協力の 새로운 構想	20
III. 域內貿易自由化의 方向과 對象分野	
1. UR이후 域內貿易自由化의 課題	25
2. 多者間 貿易自由化의 補完的 推進	27
3. 域內貿易活性化의 基盤造成	32
4. 新協商分野에 대한 共同意見 調律	36
IV. 域內貿易自由化의 諸形態 및 評價	
1. 開放的 地域主義와 一方의 自由化	39
2. 自由貿易地帶 形成	40
3. 開放的 地域協約과 條件附 自由化	44
V. 韓國의 選擇	
1. 亞·太經濟協力の 靑寫眞 提示	46
2. 政策方向 및 戰略	50
VI. 結論	55
參考文獻	59

附 錄

1. EPG報告書の 提案	63
2. APEC TIF의 主要內容	69

表 目 次

〈表 1〉 域內貿易自由化 및 貿易活性化 論議의 主要議題	25
〈表 2〉 域內貿易自由化의 對象分野	28
〈表 3〉 UR 協商과 亞·太主要國의 關稅率 引下	29
〈表 4〉 自由貿易地帶에 관한 主要爭點	42
〈表 5〉 亞·太經濟協力 主要課題에 대한 會員國들의 立場	52

要 約

UR妥結과 亞·太經濟協力の 새로운 地平

- UR협상의 타결은 범세계적 자유화 및 세계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요교역국의 무역불균형이나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보호주의 및 배타적 지역주의의 지속을 우려케 하고 있음. 지역주의의 견제 및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목표로 태동된 아·태경제협력은 世界主義와 地域主義의 혼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이 계속 인정된다고 하겠음.
- 작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5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서는 정상회담 개최, 멕시코 및 파푸아 뉴기니의 신규가입 이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설치 등 APEC의 위상 제고 및 기능 강화가 이루어짐. 또한 이제까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APEC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짐.
 -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한 기본합의 (APEC TIF)”의 체결은 회원국간 貿易 및 投資의 擴大 및 自由化에 필요한 政策協議를 정례화하는 기틀을 마련함.
-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構想들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추진을 기초로 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장기적 비전으로 제기하고 있음.
 - 美國 클린턴 행정부의 “新太平洋共同體 構想”은 소위 “공정무역” 실현을 위하여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APEC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려는 입장을 반영
 - APEC 저명인사그룹(EPG)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지역차원에서의 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 및 이에 기초한 “亞·太經濟共同體 創設”을 주창

-UR타결을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특히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협조가 주요 협력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 및 개도국간에 이해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어 향후 아·태경제협력의 실효성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지역경제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域內貿易自由化의 方向 및 對象分野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수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기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함. 따라서 WTO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지역차원에서의 추가적 자유화, 무역활성화의 기반조성, 차기 다자간 협상의제에 대한 공동의견 도출 등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多者間 貿易自由化의 補完的 推進을 위하여 우선 亞·太投資協定の 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투자자유화 : 아·태지역에서의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UR TRIMs 협정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협약 체결이 필요함. (아·태투자규범의 조속한 체결 및 OECD의 자유화 규약과의 연계 필요)
- 관세인하 : 회원국간의 전반적 또는 부문별 관세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추가적 관세인하는 통관절차 간소화나 관세기준 통일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임.

-域內貿易活性化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標準調和 및 地域統合에 대한

共同對應이 추진되어야 함.

- 標準 및 調和 : 우선적으로 회원국간에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 시험검사 및 인증,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에서의 국제기준 제정을 검토하여야 함.
- 地域統合에 대한 共同對應 : 소지역주의간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배타적 보호주의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APEC산하에 역내무역정책 검토제도(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을 설치하고, 對外的으로 EC와의 공식적 협의창구 개설을 추진하여야 함.
- 分爭解決節次의 整備 : 선진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별도절차를 마련하기 보다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외적으로 지역차원에서의 추가적 자유화나 WTO체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협력분야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環境, 競爭政策, 勞動條件, 技術政策 등 新協商分野에 있어서는 역내 협약의 추진보다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의 공동의견 도출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함.

- 環境問題 : 환경 및 무역간의 조화는 회원국들의 현저한 이해대립으로 공동의견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APEC 무역투자위원회에 실무반의 설치·운용이 필요
- 競爭政策 : 회원국간 경쟁정책의 상호인지, 협의 및 정보교환에서의 협력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경쟁정책에 대한 공동선언문이나 권고문 형태의 방향제시가 필요

域內貿易自由化의 形態 :

一方的 自由化, 條件附 自由化, 自由貿易地帶 形成 比較

—域內貿易自由化를 추진함에 있어 開放的 地域主義가 표방하여 온 “無條件的 最惠國 原則”은 다자간 자유무역정신에는 부합되나, 역외국가들의 자유화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회원국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희박함.

- 미국과 일본과 같은 거대개방경제의 경우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는 역외국에 대한 일방적 자유화와 동시에 협상력의 자발적 포기를 의미함.

—一方的 自由化가 지나는 無賃乘車問題 및 일부 회원국에 의한 자유화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條件附 自由化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협력의 목표와 의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地域協力の 排他性 문제는 지역협약에 대한 참여를 역외국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회원국들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지역협약 체결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면, 지역협약의 참여는 회원국들에게 일임하고 지역협약의 제정은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 태지역에서의 自由貿易地帶 形成은 회원국간 경제발전단계 및 무역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 개도국들은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유치산업보호론이 아직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임. 또한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 개도국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득 및 비용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임.

韓國의 立場 및 政策方向

— 韓國의 입장에서 아·태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역내 선진국이나 개도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예상되는 부당한 협상압력의 해소 및 새로운 통상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韓國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함.

- 補完的 貿易自由化와 貿易活性化 추진 : 아·태지역은 자유무역지대나 경제공동체 형성보다는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입장조율, 보완적 자유화 추진 및 무역정책과 제도의 조화를 통한 무역활성화에 비중을 두어야 함.
- 政策協議體로서의 APEC 역할 제고 : 시장기능에 입각한 지역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APEC이 회원국간의 정책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 및 조직을 갖추는 데 기여하여야 함.

— 韓國의 아·태경제협력 정책방향과 전략은 多者主義原則에 입각한 經濟的 實益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음.

多者主義 優先原則 確立: 韓國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성공적 추진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역내무역자유화는 자유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함.

- WTO와 양립하기 힘든 분쟁해결절차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는 반대하여야 함.

漸進的·實質的 地域協力 推進 : 韓國은 역내무역자유화를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동일시하는 개도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나 무역활성화를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동시에 선진국의 관심사인 역내무역자유화의 실질적 진척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投資협정이나 표준조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일본 및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및 역내경제블럭의 개방성 유지문제 제기

協商力提高를 위한 事案別 連繫 : 韓國은 지역협력의 과제 및 추진속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주요 협력과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ASEAN이나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나 북미 선진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과 유사함. 그러나 일본과의 연계강화는 북미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협력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開放的 地域協力 指向 : 한국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우위를 두어야 하며, 일부 국가들과의 小地域主義的 協力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소지역협력에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 EAEC) 가입을 유보하는 대가로 북미국가들에 대하여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은 동북아경제협력과 같이 지역협력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I. 序 論

21세기의 개막을 눈앞에 둔 세계경제는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따라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生産의 世界化(globalization) 현상이 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기초단위로서 국민경제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개별국가 사이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행정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世界化와 별도로 세계경제의 地域化(regionalization)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지역국가들끼리 경제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교역장벽 철폐의 선별적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블록의 출현은 역내국가 및 역외국가 간에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형태이든지 지역통합은 개별국가간의 통합을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1993년말 극적으로 타결된 UR협상은 범세계적 자유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종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력을 갖는 WTO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의 실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가간의 무역불균형이나 선진국들의 심각한 실업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계무역은 보호주의 및 배타적 지역주의의 공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이, UR 타결이 세계화 및 지역화, 그리고 자유무역 및 보호주의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한다면,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인

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추진방안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UR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속에서 아·태지역통합의 경제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향후 협력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93년말 美國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5차 亞·太經濟協力關係會議(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域內貿易自由化의 가능성 및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國의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전반적 정책방향 및 선택가능한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989년 출범한 APEC은 무역활성화,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인적자원 등의 협력과제를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역내 무역자유화의 추진이 정식의제로 채택되고 보다 긴밀한 정책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이 지역적 경제통합을 공고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교역장벽의 자유화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정보교환의 활성화 등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도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들은 APEC을 실질적 시장개방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경제협력은 협력의 목적 및 추진방법에 대한 회원국간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불가피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本 報告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아·태경제협력의 원동력을 준거로 하여 이제까지의 APEC의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新太平洋共同體 構想, APEC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에서 제시한 亞·太經濟共同體 構想, 그리고 APEC 무역 및 투자에 대한 基本宣言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PEC TIF)을 중심으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UR협상 결과를 기초로 다자간 무

역자유화의 보완적 추진, 역내무역활성화의 기반조성, 차기 신탁상분야에 대한 공동의견 조율 등 역내무역자유화의 과제 및 대상분야를 검토하여 본다. 제 IV장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역외적용원칙을 중심으로 역내무역자유화의 추진형태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한 후, 아·태자유무역지대 형성의 찬반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 V장에서는 韓國의 입장에서 아·태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정리하고, 여기에 기초한 韓國의 정책방향 및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마지막으로 제 VI장에서는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을 요약하기로 한다.

II. 亞·太經濟協力の 構想과 現況

1. 亞·太經濟協力の 原動力

1989년 출범한 APEC 각료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역주의적 협력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APEC 각료회의는 아·태경제협력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통해 세계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및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은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새로운 경제블럭의 형성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PEC, 1989 참조).

이제 출범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APEC활동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에 비추어 아·태경제협력의 목적 및 추진방법의 적합성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태경제협력이 1980년대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Elek, 1992 참조).

첫째, EC통합과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地域主義 확산과 이에 따른 자유무역체제 약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들 수 있다. 日本 및 ANIEs, 그리고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은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을 채택하여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다자간 자유무역질서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C의 단일시장화 및 북미지역의 경제블럭형성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역외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태국가들은 지역주의의 위협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태지역내에서도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이외에도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st Asia Economic Caucus : EAEC)구상이나 동북아시아경제협력 등 다양한 성격의 小地域主義的 協力이 진전됨에 따라 이들간의 갈등가능성을 해소하고 이들이 개방성을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APEC이라는 광역협력체의 출범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리와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공정성 유지에 대한 동아시아의 우려가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1980년대 중반이후 아·태지역에서의 貿易摩擦이 표면화됨에 따라 이를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아·태지역은 활발한 역내교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 그리고 아시아 개도국의 일본에 대한 적자라는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간 무역불균형은 환율조정이나 구조조정 협의와 같은 쌍무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일본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는 한편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국가들은 쌍무적 무역불균형의 해소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무역균형을 위한 정책협의를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넷째, 지역주의는 정태적으로 역내국가간에는 무역확대를 가져오는 대신, 역외국가로부터 역내국가로 貿易轉換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태적으로 규모경제 실현 및 경쟁강화를 통하여 역내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역외국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EC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아·태국가들은 세계경제성장의 축이 다시 유럽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아·태지역 차원에서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고 물리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상에서 지적된 네 가지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요소라기보다

상호연관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EC 통합을 비롯한 역내의 地域主義 深化에 대한 警戒와 地域經濟統合을 통한 成長潛在力의 擴充이 아·태경제협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경제협력의 향후 전망은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실제로 협력의 추진이 이러한 필요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역으로 새로 출범한 WTO체제가 지역주의 및 역내무역갈등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지역경제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겠다.

2. APEC과 亞·太經濟協力の 現況

아·태경제협력의 목표가 다자간 무역질서의 확립 및 지역경제통합에 있다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인가? 우선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아·태국가들은 다자간 자유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협정준수에 있어서의 공동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역내 소지역주의에 대한 감시 및 조정, 그리고 다자간 무역질서의 틀안에서의 쌍무 무역갈등 해소 등이 주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경우에는 해당국가들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교류를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자유화 뿐 아니라 정보교환 및 교통 등에서의 물리적 장애의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관광,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그동안 APEC의 역할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APEC은 UR의 조속한 UR타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제 5차 APEC 회의에서는 전자 및 목재 등 몇몇 분야에 있어서의 무관세화 및 관세인하를 EC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미국과 EC간의 타협의 결

과 가까스로 종결된 UR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APEC의 주요활동으로는 協理事業 추진과 域內貿易自由化 추진을 들 수 있다. 우선 協理事業은 총 10개 분야(무역 및 투자 통계자료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력자원 개발, 지역에너지 협력, 해양자원 보존, 통신, 수산, 교통, 관광)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협력과제의 목적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PECC와 같은 여타 협력체에서 이미 추진중인 협력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될 뿐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협조에는 오히려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투자 및 기술이전의 경우, 정보교환 강화만을 다룸으로써 투자정책의 조화나 투자장벽의 자유화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의 경우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존의 지원수준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사업이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公共財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APEC에서의 域內貿易自由化 논의는 지난 1991년 7월 호주에서 제 1차 비공식회의(APEC Informal Meeting on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RTL)를 개최한 이래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주요과제를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의 촉진에 두고, GATT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장벽을 추가적으로 철폐하며, 이러한 혜택을 역외국가들에게도 최혜국 대우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RTL에서는 시장접근을 위한 행정적 장벽의 완화, 회원국들의 투자법규에 대한 백서 발간, 통관절차의 조화 및 관세 데이터베이스의 전산화 등 4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자유화방안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제 UR타결과 함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5차 APEC 회의에서는 美國이 제안한 “APEC 貿易 및 投資에 대

한 基本宣言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이 채택되었고, 亞·太經濟共同體의 창설을 위한 역내무역자유화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협력사업과 달리 역내무역자유화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의 이해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는 지역협력에 있어서 APEC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APEC의 역할 강화는 APEC의 조직 및 기능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PEC이 비공식적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정책협조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3년 1월 APEC 사무국의 설치와 함께 제 5차 APEC 회의에서 결정된 무역투자위원회의 발족은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PEC이 실질적인 정책조정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亞·太經濟協力の 새로운 構想

新太平洋共同體 構想

美國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7월 日本과 韓國 순방시 “新太平洋共同體” 구상을 발표하였다. 冷戰體制의 終熄과 地域主義 深化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體制 및 開放的 經濟協力體制의 強化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제안은 美國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측면에서는 기존의 APEC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강화 및 역내무역자유화의 적극적 추진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아시아가 美國의 국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하

졌다. 예를 들어 美國의 대외무역에서 APEC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의 40.7%에서 1990년에는 53.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증가가 미국의 급속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1992년의 경우 美國은 상품교역에서 총 1,0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 바 (IMF, *Direction of Trade*, 1993), 이 중에서 日本, 中國, ANIEs와의 적자가 83.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로서는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역내무역불균형의 해소에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적극적 추진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APEC의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美國은 NAFTA 비준과 UR타결에 이어 APEC에서의 추가적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최근 '수퍼 301조'의 부활은 소위 '공정무역'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APEC의 협력논의가 주로 지역통합의 하부구조건설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교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亞·太經濟共同體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 構想

제 5차 APEC 회담에 제출된 EPG 보고서는 아·태경제협력의 목표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주창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궁극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 실무적이고 점진적인 무역활성화 계획을 즉각 추진한다. 셋째, 교육, 운송, 통신망 및 에너지 등 균형적 사회간접자본의 제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APEC의 최소한의 기구화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료 회담 및 정상회담 (비공식 지도자회의)을 활용하여야 한다.¹⁾

아·태경제공동체의 구상중 이제까지의 APEC 논의와 구별되는 점은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EPG 보고서의 핵심은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 달성을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지역차원에서의 추가적 자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PG 보고서는 역내무역자유화가 범세계적 자유화의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ratcheting up)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의 대상으로는 UR협상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서 경쟁정책, 분쟁해결절차, 환경문제, 연불수출제도, 금융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부구매, 지적재산권, 국가무역, 관세 인하 및 일치 등을 거론하고 있다.

EPG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태경제공동체가 암묵적으로 유럽과 같은 구체적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한다고 할 때, 이는 또 하나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하는가? EPG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EPG 보고서는 역내무역자유화가 GATT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는 GATT 24조는 자유무역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회원국들 상호간에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들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最惠國 대우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백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GATT가 실제로 수많은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형성을 허용하여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아·태자유무역지대의 형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PG 보고서가 역내무역자유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의 개념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APEC 회원국 뿐 아니라 EPG내에서도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제 5차 APEC회의에서 EPG 보고서를 채택하는

1) EPG 보고서의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대신에 EPG의 활동을 1년간 연장하여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제 6차 회의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역내무역자유화의 구체적 목표 및 추진방안의 도출여부가 주목된다.

貿易·投資 擴大 및 自由化를 위한 政策協議

제 5차 APEC 회의에서 채택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본선언(APEC TIF)은 貿易 및 投資의 擴大 및 自由化를 위한 政策協議의 定例化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APEC 각료회담 산하에 “貿易投資委員會”를 설치하고, 委員會에서 協力課題(work program)를 선정,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多者間 또는 域內 主要 通商懸案에 대한 회원국간 政策協調를 도모하자는 것이다.²⁾

APEC TIF는 원칙적으로 협의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주요 현안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과제의 선정자체가 역내무역자유화의 장기적인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1994년도에 추진될 協力課題로서는 APEC RTL 모임에서 이미 추진중인 시장접근관련 행정규제 완화, 관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투자정책 자료집 출간, 통관절차의 간소화 이외에도 무역정책협의, 표준, UR 후속 조치 등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APEC TIF의 원형은 미국이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추진하여 온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TIFA는 쌍무협상을 정례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협의를 보장하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 美國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 아·태지역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을 살펴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서비스, 보조금

2)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및 투자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우선협약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APEC TIF는 前文에서 GATT체제 및 원칙을 존중하며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도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있다. APEC TIF의 내용 역시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협정체결에 대한 근거가 될 소지는 최대한 배제되어 있으며, 정책협약의 활성화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APEC TIF는 장기적으로 정책협약의 공식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인 성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하겠다.

Ⅲ. 域內貿易自由化의 方向과 對象分野

1. UR이후 域內貿易自由化의 課題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태경제협력에서 역내무역자유화가 차지하는 위치는 UR의 타결과 함께 크게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 협력이 새로 출범한 WTO체제의 강화를 전제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때, 역내무역자유화의 주요과제 및 대상분야는 무엇이 될 것인가?

〈表 1〉에는 다자간 자유화협상이나 역내 소지역주의적 협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이 정리되어 있다. APEC에서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는 이러한 분야들 중에서 회원국들간에 의견조율이 가능한 분야를 중

〈表 1〉 域內 貿易自由化 및 貿易活性化 論議의 主要議題

APEC EPG	APEC TIF	Post-UR ¹⁾	NAFTA ²⁾	AFTA ³⁾
환경	무역정책협의	환경	관세인하 및 철폐	관세인하
경쟁정책	통관절차	경쟁정책	비관세장벽완화	수량제한 / 비관세장벽철폐
분쟁해결절차	투자	투자	투자	관세인하품목 외환규제완화
수출금융	관세전산화	기술정책	지적재산권	추가적 협력가능성 모색
금융서비스	시장접근규제	지역통합	금융서비스	· 표준
외국인투자	UR 후속조치		정부조달	· 외국인투자장벽 제거
정부조달	표준 및 조화		긴급수입제한	· 공정경쟁규칙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환경 및 노동기준	· 거시경제정책 협조
정부무역	EPG 의제		역외국 대우	· 벤처캐피탈 장려
관세인하	추가적 의제개발		원산지규정	· 제품검사보증 상호인정
관세조화			특혜관세(GSP)철폐	

註 : 1) Feketekuty, 1992 참고

2) 김상겸, 1993 참고

3) 김희주, 1993 참고

심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UR협상에서 다루어졌던 의제로서 APEC TIF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표준일치 등을 들 수 있으며, 폭넓게 정의되어 있는 시장접근규제에 관세인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UR이후 새로운 관심사가 될 분야로는 환경 및 경쟁정책을 비롯하여 투자, 기술정책, 지역통합, 노동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투자문제가 차기 다자간협상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선진국들은 UR협상에서의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Feketekuty, 199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흥상분야의 대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해가 크게 대립되고 있어 아직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APEC EPG에서 제안한 자유화대상을 보면 다자간 협상 및 역내 소지역주의적 무역자유화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대상분야들이 아·태 회원국 모두의 공동관심사라고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역내무역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의 이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역내무역자유화 추진은 우선 아·태지역의 이질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협상분야를 신중히 선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역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 상품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장벽의 철폐보다 자국기업활동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 시장 개방 및 영업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구조조정 부담을 안게 될 시장개방보다는 선진국의 기존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무역보복이나 무역제한적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분야에 따라 회원국 전체의 이해대립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역내무역자유화 추진속도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내무역자유화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검토할 점은 회원국들의 개별적 관심분야를 모두 묶어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비교적 의견일치가 쉬운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前者의 경우, 회원국간 이해대립을 분야별 자유화폭의 조정에 의하

여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後者의 경우에는 회원국간의 이해가 비교적 일치하기 쉬운 분야부터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해대립이 큰 분야는 자유화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兩者사이의 선택은 결국 多者間 自由貿易體制의 위상 및 역내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WTO체제의 효율적 운용이 전제가 된다면 역내무역자유화의 추진방안으로는 後者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내무역자유화의 우선과제를 요약하면 UR 협상 타결에 따른 추가적 자유화 추진, 지역차원에서 무역활성화의 기반조성, UR이후 중점적으로 논의될 새로운 협상과제들에 대한 공동의견의 도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투자, 지역통합 및 표준조화, 환경 및 경쟁정책 등을 들 수 있다. <表 2>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역내무역자유화의 주요 대상분야 및 과제가 요약되어 있다.

투자는 UR의 후속조치로 추가적 자유화가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표준조화 및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대처는 다자간 체제를 지역차원에서 보완함으로써 지역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UR타결 이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환경 및 경쟁정책에 대하여 역내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내무역자유화의 주요 과제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多者間 貿易自由化의 補完的 推進

關稅引下

관세인하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같이 아·태국가들간의 이해대립이 가장 첨예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인하는 장기적으로 규제의 완화,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촉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

〈表 2〉 域内 貿易自由化의 對象分野

분 야	단 기 과 제	중·장 기 과 제
투자*	역내 투자협약 체결 투자정보지원체제 확립	간접투자의 자유화 OECD 자본자유화규약과의 조화
지역통합*	역내 TPRM 설치	역의 지역주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대응 강화
표준조화*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 확대	표준조화의 점진적 추진 지역표준의 제정
분쟁해결절차	정책의 명료성 제고 국제협약가입을 통한 중재기반 마련	일방주의 억제 APEC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시장접근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기준 통일	관세 및 비관세 자유화협약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기술협력과의 연계 강화
경쟁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운영 개선	역내 경쟁정책의 조화
기술정책	기술정책에 대한 공동입장 조율	역내 기술관련 정책의 조화
환경*	국제협약 및 국내기준과의 조화	역내 환경정책 및 무역정책의 조화

註 : * 우선추진분야

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타결된 UR의 경우를 예로 들면 OECD 및 세계은행의 공동연구는 UR협상에 따른 부분적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는 2002년까지 세계전체의 국민소득을 2,000억 달러, 즉 현재수준의 1% 정도만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Goldwin 외, 1993 참조) 미국 및 일본의 소득증가는 각각 0.2%와 0.9%에 불과한 반면,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장기적 이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보호장벽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APEC의 개도국들의 대부분이

동태적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유치산업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表 3〉은 UR협상에 따른 아·태 주요국들의 관세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점은 UR에서의 전반적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아·태 국가들의 관세율 수준이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는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GAT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상당히 높은 보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개도국들은 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에서 높은 보호장벽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들은 섬유·의복, 가죽 및 고무 등 노동집약적 소비재 부문에서 아직도 높은 관세율을 보이

〈表 3〉 UR協商과 亞·太 主要國의 關稅率 引下

(단위 : %)

품 목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태국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전 품 목	5.4	3.4	3.6	1.6	8.6	5.3	20.4	11.4	17.5	11.9	20.9	20.9	36.3	34.0
농산품	3.8	1.1	3.7	2.2	6.3	4.2	11.9	11.9	44.5	34.9
공산품	5.5	3.5	3.6	1.6	8.9	5.5	21.1	11.7	17.5	11.9	22.3	22.3	35.7	33.9
목재·종이	2.9	0.3	2.3	0.9	8.4	4.3	14.6	8.4	12.1	6.3	13.8	13.8	22.7	20.4
섬유·의복	17.0	15.7	9.1	6.0	21.1	13.4	39.3	29.8	17.5	10.7	28.0	28.0	40.4	26.0
가죽·고무	8.5	7.8	8.4	8.2	15.3	11.0	26.0	19.8	17.3	7.1	28.5	28.5	37.2	34.6
금속	3.9	1.4	2.2	0.6	7.3	4.9	16.5	10.5	13.4	8.2	13.4	13.4	18.3	18.2
화학	5.2	2.8	4.9	1.3	10.1	5.2	11.7	6.3	18.7	13.0	26.5	26.5	34.9	32.6
운송장비	3.7	3.1	2.1	0.0	7.1	4.8	39.1	16.0	9.1	6.0	27.2	27.2	63.6	63.6
일반기계	3.6	0.9	3.8	0.0	6.2	3.8	16.2	9.7	19.4	14.1	29.2	29.2	32.6	32.2
전기기계	4.6	2.0	2.9	0.1	7.6	3.1	25.5	13.9	22.0	18.3	26.8	26.8	35.8	35.8
귀금속	3.7	3.2	1.8	0.9	5.8	3.8	11.5	6.4	13.0	6.6	10.3	10.3	21.9	21.2
기타 제조	4.7	1.7	2.9	0.9	7.1	4.7	10.9	6.0	22.9	15.4	22.6	22.6	38.9	34.8

註 : I 과 II 는 각각 UR협상 이전(1986)과 UR 양허관세율(1991년 기준)을 표시.

資料 : GATT, *Overall Review and Assessment of Proposals*, July 1991. 김인철 (1992)에서 재인용.

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보호장벽의 동시적 인하는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고용 및 소득의 감소 등 구조조정 부담을 증대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개도국 대부분이 기계나 운수장비 등 자본재 부문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추진될 자유화의 진전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역내관세인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은 없는가? Elek (1992)은 아·태지역에서의 자유화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으로, ① 역내 상호보완성이 높고, ② 자유화의 순이익을 계량화할 수 있으며, ③ 보호장벽의 본래목적이 더 이상 유효치 않으며, ④ 천연자원 부족 및 운송비로 역외국들의 경쟁력이 약할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분야는 가공광물, 섬유 및 서비스부문이다. 제조업의 대부분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서비스가 위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는 명확치 않다.

결론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관세인하는 UR협상에서와 같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며, 단기적으로 관세인하는 몇몇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세인하를 포함하여 시장접근문제는 현재 APEC RTL에서 추진중인 통관절차의 간소화나 관세기준 통일, 규제의 명료성 제고 등과 같은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亞·太 投資規範

1980년대 이후 생산의 급속한 세계화 진전과 함께 직접투자가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역내 분업체제를 삼화시킬 뿐 아니라 무역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접투자는 단순히 정보교환 이외에도 투자장벽의 철폐를 위한 적극적 정책협조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UR 무역관련투자조치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 TRIMs)협정은 무역왜곡효과를 갖는 투자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규투자에 대한 일부 投資履行條件 (국산부품사용, 외환통제, 수출의무 등)의 부과금지에 그치고 있다. OECD 자본자유화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 설립권이나 실질적 내국민대우와 같은 사항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직접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UR 협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역내투자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구체화되고 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제안한 아·태투자규범(Asia Pacific Investment Code : APIC)은 정책의 명료성 제고, 최혜국대우, 설립권 보장(업종제한의 네거티브 시스템 채택), 송금 제한의 철폐, 국유화시 보상에 대한 보장, 투자이행조건 부과금지, 조세 및 인센티브 체제의 조화 등 회원국들의 의무조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국의 과학, 기술, 인력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투자혜택의 분배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아·태지역에서의 투자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역내투자자유화 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는 타분야보다 높다고 전망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최혜국대우의 역외적용, 투자이행조건의 완전 금지, 국유화시 보상조건, 역외국의 참여문제 등 의견일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부문도 있다. (신희택, 1993 참조) 투자이행조건이나 국유화보상조건 문제는 개도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권한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와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세계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국가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혜국대우나 참여대상국 문제는 지역협약과 다자간 협약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상당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역내투자규약의 체결은 회원국들 뿐 아니라 범세계적 투자자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직접투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나 해외채권발행과 같은 간접투자 역시 역내자유

화의 진전이 유망한 분야라고 하겠다.

3. 域內貿易活性化의 基盤造成

標準 및 調和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화는 본래 각국이 자국시장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발전단계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표준화의 국제적 조화는 무역이나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준화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보건, 환경, 안전 등 특정부문에서 강제력을 지니는 기술규정의 제정이 확산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ATT에서는 도교라운드에서 표준화가 무역제한적 장벽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번 UR 협상에서는 강제력을 지닌 기술규정이나 권고사항인 표준을 정의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 뿐 아니라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까지 포함하도록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며, 무역장벽화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의경제정책연구원, 1993 참조)

아·태지역국가들은 각기 상이한 표준체제 및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 표준화 추진단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무역마찰의 소지가 크다. 특히 기존 국제기준이 대부분 EC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역내 최대시장인 미국이 상당수 독자적인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표준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무역활성화에 직접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지역에서의 표준조화는 우선적으로 회원국간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 시험검사 및 인증,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아·태지역에서 이를 수용하고 만약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손찬현, 1993 참조) 지역 차원의 새로운 표준 제정은 국제기준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에서의 역내교역비중 증대를 감안하여 美國 및 일본 등 아·태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分爭解決節次

아·태지역은 EC와 달리 역내 회원국이 높은 무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일본의 무역수지흑자 및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이다. 이러한 역내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일간 포괄경제협회의 결렬과 '수퍼 301조'에 기초한 미국의 보복위협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특히 NAFTA의 본격적 진전은 갈등의 소지를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을 억제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UR협상 결과 다자간체제의 분쟁해결절차 및 기능이 대폭 개선된 것은 꼭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WTO체제에서는 모든 분쟁이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단일화되었으며,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뀔으로써 일부국가에 의한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패널보고서나 상소보고서의 채택시한을 설정하여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최종결정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증대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참조)

한편 UR협정은 WTO회원국들이 관련협정하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반

드시 DSB를 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퍼 301조의 부활은 이러한 WTO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 따르자면 WTO체제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역문제에 대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WTO체제의 자유화수준을 넘어서거나, 또는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논의라고 하겠다.

아·태지역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협력분야 및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태지역국가들은 정책 및 관련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국제협약 가입을 통하여 일방주의적 해결을 억제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태지역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WTO와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하여 협상력 약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WTO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아·태지역에서 WTO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덧붙여 추가적 자유화가 이루어지거나 WTO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국간 일방조치의 억제를 대가로 WTO와 별도의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WTO와 APEC중심의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대한 절차선택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채욱, 1993 참조)

域内外 地域主義에 대한 共同對應

아·태지역에서 소지역주의적 협력은 줄어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지대의 남미로의 계속적인 확대는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지역주의적 대응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아·태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과 소지역주의적 협력간에는 상당부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지역통합에 관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역내 소지역주의적 협력을 인정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소지역주의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역내 소지역주의간 갈등을 해소하고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지대나 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소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이 배타적 보호주의로 흐를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규정은 섬유나 자동차부품등에 대해서는 역외국가에 대하여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품목에 따라 특수 공정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역내부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호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 또한 결과적으로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무역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다. (한홍렬, 1994 참조)

소지역주의적 협력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의 공정성유지는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역내 공동노력의 시범적 예가 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다자간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GATT의 무역정책검토제도(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TPRM)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태경제권의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는 역외 지역주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GATT차원에서 지역통합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C통합으로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보호장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그간 아·태경제협력체의 주요관심사였으나, 실제 가용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인다. 향후 EC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아·태경제권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공동의 입장정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측면에서 EC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협력체간에 공식적 협의창구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C와 APEC의 주요회의에 공식적 참관인(observer)을 파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4. 新協商分野에 대한 共同意見 調律

環境政策

UR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문제는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간의 조화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및 「滅種위기에 처한 야생식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등 국제협약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제재조치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단순한 국제협약의 이행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무역제재조치를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시 미국이 별도의 부속협정을 통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벌과금 부과 및 벌과금 미납시 무역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용택, 1993 참조)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는 기존의 무역자유화의 대상문제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며, 환경우위 및 무역우위간 선진국·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아·태지역에서의 환경 및 무역자유화간의 조화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협상문제에 대하여 공동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회원국들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환경기준의 제정 및 국내환경기준의 조화,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규제조치의 허용범위, 환경기준을 둘러싼 분쟁해결절차 등 다자간 규범제정에 대비하여 APEC 무역투자위원회에 실무반을 설치하여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자유화 논의에서의 환경문제와는 별도로 아·태지역 환경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기술의 회원국간 상호교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동성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러시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들 수 있다. (박주헌, 1993 참조) 이러한 문제들을 APEC내에서의 협력과제로 선정하여

지역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력모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競爭政策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회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반경쟁적 영업관행이나 시장조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무역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반경쟁적 관행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조치 또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조화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간 조화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경우는 미국과 일본간의 구조조정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경쟁정책이 수입품의 판매거부, 불공정한 입찰제도, 배타적 계열화 등을 통한 국내생산자들간의 담합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진출의 제약도 문제시되었다. 한편 미국은 自國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UNCTAD에서는 1980년 제한적 영업관행에 대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을 제정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OECD에서는 1986년 무역 및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하기에는 의견차이가 큰 상태이다.

APEC의 회원국들 사이에는 아직 경쟁정책의 개념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개도국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일본과 같이 경쟁정책이 상당히 미약한 경우도 있어 역내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선 공동선언문이나 권고문 형태의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역내 경쟁법 협정을 체결하

여 우선적으로 상호인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진수, 1993 참조)

IV. 域內貿易自由化의 諸形態 및 評價

1. 開放的 地域主義와 一方的 自由化

APEC내에서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근거한 기능적 통합을 아·태경제협력의 목표로 삼아 왔다. 그 근거에는 아·태지역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나 제도상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EC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자리잡고 있다. 설사 그러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지역협력이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한,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현재까지의 기본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무역자유화 형태에 대한 APEC의 기본시각은 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국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부여한다는 開放的 地域主義로 요약된다. 이는 회원국들의 一方的 自由化를 의미하는 바 일방적 자유화는 범세계적 자유화와 양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가 표방하는 “무조건적 최혜국원칙 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개방적 지역주의의 최대약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無賃乘車問題 (the free-rider problem)의 심각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화의 혜택이 아무런 대가없이 역외국에게 부여되고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때,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자간 협상에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일방적 자유화는 이러한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또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일방적 자유화의 정태적인 경제적 효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小國과 달리 巨大開放經濟의 경우에는 일방적 자유화가 오히려 자국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³⁾ 아·태지역을 하나의 거대개방경제라고 간주하고 EU

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개방경제와의 교역을 상정하여 보자. 동시적 자유화는 두 경제 모두의 후생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으나, 일방적 자유화는 상대방의 후생을 증가시키지언정 자국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EU와 같은 강력한 경제블럭이 자유화를 유보하는 상황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일방적 자유화가 실행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무임승차문제 자체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유화의 효과가 역내 회원국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의 자유화 추진은 선별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자유화의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自由貿易地帶 形成

역내무역자유화의 핵심이 자유무역의 촉진에 있다고 할 때,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쌍무주의나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후 자유무역체제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여 왔던 미국이 다자주의 우선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보는 기본시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자유무역지대의 찬반론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긍정론은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 규모의 경제

3) 국제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거대개방경제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일방적 자유화의 결과 관세율이 최적수준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Whalley, 1985 및 Dornbusch, 1990 참조)

및 경쟁촉진으로 인한 경쟁력증대 등의 생산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또한 지역주의적 접근이 다자간 체제의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Dornbusch, 1990 참조)

이에 비하여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반대론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실제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르는 무역전환은 역외국들의 후생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무역갈등을 불가피하게 하며, 결국 세계경제전체는 물론 회원국들의 후생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블럭은 자유무역체제 실현의 디딤돌이라기보다 걸림돌이며,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은 강력한 다자간체제의 감시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Bhagwati, 1992 참조)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평가는 결국 세계경제전체의 이익과 자국경제의 이익중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르는 주요쟁점을 정리하면 <表 4>와 같다.

이제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가능성 및 예상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아·태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해서는 60년대 중반 일본의 Kojima 교수가 제시한 PAFTA(The Pacific Free Trade Area) 구상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아·태지역에서 NAFTA 및 AFTA 등 개별적 경제블럭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와 동아시아지역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라는 하나의 경제블럭으로 엮는 것이 아·태지역 전체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무역자유화의 가장 확실한 추진방안일 뿐 아니라, NAFTA 및 AFTA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日本 중심의 경제블럭 가능성에 대한 EU나 미국측의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블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Dornbusch, 1989; Frankel,

〈表 4〉 自由貿易地帶에 관한 主要爭點

논 점	부 정 론	긍 정 론
역내자유무역 촉진 효과	상당한 시간 소요 (예: EC) 회원국들의 협상력에 좌우	다자주의보다 단기간 소요 회원국들의 공동이익 실현에 효율적
회원국에 대한 후생효과	효율적 역외국으로부터 비효율적 회원국 으로 무역전환 발생시 후생 감소 가능 (회원국간 무역창출시에는 반드시 후생 증가)	무역전환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 · 소비자 후생증대 ·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에 의하여 생 산성 및 경쟁력 증대 · 역외국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역외국에 대한 후생효과	무역전환 및 교역조건 악화로 후생 감소 (무역창출시 후생 증가)	역외국의 정태적 후생 감소 인정 (동태적으로 성장에 따른 무역창출로 보 상 가능)
GATT체제와의 관계	무역전환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 완적 수단 · GATT 24조: 완전자유화 전제 · 역외국에 대한 관세인하 필요	다자주의 무역체제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
다자간 자유화 에의 영향	다자간 무역자유화 저해 및 무역마찰 초 래	다자간 노력에 부정적 영향 인정 (자연적 경제블럭은 예외) 무역전쟁의 가능성은 희박

註 : Bhagwati, 1992; Dornbusch, 1990; Krugman, 1991 참조

1991; Frankel and Wei, 1993 참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가 점차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일본의 의도적 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추진되느냐는 또다른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NAFTA의 확대와 미국과 아시아국가들간의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아시아지역에서의 배타적 지역통합 움직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태자유무역지대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EU와 아·태지역이라는 두 개의 블럭으로 나뉘는 것이 EU,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3극체제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⁴⁾

4) Krugman (1991a, b)에 의하면, 경제블럭에 따르는 회원국들의 후생효과는 세

그러나, 이제까지 언급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하나의 대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효과의 유무를 떠나서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 형성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EU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보면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블럭 형성의 기본요건으로는 ① 소득수준(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 ② 지정학적 근접성, ③ 무역체제의 조화, ④ 지역협력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Schott, 1991 참조)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정학적 근접성은 아·태지역의 경우에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역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문제 역시 아·태지역이 과거 EU의 경우와는 달리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공동의 대응목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회원국들의 교역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U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과 아·태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비슷하다고 할 때, 일본에 대한 견제가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 및 무역체제의 조화는 단기간내에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는 아·태경제권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日本을 발전모형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의 개도국들에게 자유무역론보다는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유치산업보호론이 아직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자본재 산업에 대하여 높은 보호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수출시장의 확보 및 무역갈등의 해소라는 이득이 있는 반면, 시장개방에 따른 전면적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비용을 동시에 의미한다. 또한 현재 아시아 개도국들은

계경제가 몇 개의 블럭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가 동일한 크기의 경제블럭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장 후생수준이 낮은 경우는 블럭의 숫자가 많을 때가 아니고 도리어 세 개의 블럭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을 경우라고 한다.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이라기 보다는 경쟁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득 및 비용은 회원국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추가적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 開放的 地域協約과 條件附 自由化

條件附 自由化는 역내자유화의 혜택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자유화의 책임을 지는 국가들에 한하여 조건부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일방적 자유화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할 때, 조건부 최혜국대우는 역내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자유화는 다자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무조건적 최혜국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형성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자유화는 무임승차문제나 일부 회원국에 의한 자유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건부 자유화의 추진은 회원국들의 자유화 의무 및 일정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약의 체결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조건부 자유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성 문제는 지역협약에 대하여 역외국들의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통합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회원국들이 행사하면서도 그 혜택을 역외국들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자간 협정에서 보다 진일보한 자유화를 역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역외국가들에게도 확산된다면 역내무역자유화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적인 條件附 自由化의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 변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자유화 혜택부여를 아·태지역국가들에게만 한정시키고 차츰 이를 역외국가들에게 확대하는 방안(temporarily

conditional MFN), 일시적으로 자유화 혜택을 역외국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조건부 자유화로 선회하는 방안(temporarily unconditional MFN), 또는 개별 회원국들에게 결정을 일임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 중 세번째 방안은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선택할 경우 조건부 자유화의 효과를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 (Bergsten, 1994 참조)

한편 조건부 자유화 방안 역시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역내 몇몇 국가가 역내투자협정을 제안하였다고 가정하자. 만약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과반수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다자간 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화의 지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소수 국가들만이 가입할 때, 이를 과연 아·태지역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대한 지속적 상호검토 및 정책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원국들에게 특정협약에 대한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협약에 대한 가입은 회원국들의 결정에 일임하되, 회원국들 대다수의 찬성이 있는 한 협약자체의 제정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⁵⁾ 이와 함께 협약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협정체결에 따르는 조정기간을 신축적으로 허용하거나, 일부 의무에 대한 면제 등 인센티브의 부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Bergsten(1994)은 아·태 투자규범을 예로 들어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는 한 지역협약의 제정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한편, 협약에 대한 참여를 회원국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는 “사실상의 만장일치(effective consensus)”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 韓國의 選擇

1. 亞·太經濟協力の 靑寫眞 提示

아·태경제협력의 주요과제는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 무역활성화 추진, 무역자유화 추진, 지역통합에 대한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과제는 회원국들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향후 원활한 협력증진이 무리없이 진전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무역자유화 및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아·태경제협력의 성공여부를 아직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보다 공정하고 유효한 시장접근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치산업보호를 이유로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힘든 문제이다. 역내 회원국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 역시 역내무역자유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태경제협력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명무실하게 지속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韓國의 입장에서 아·태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아·태경제협력 성공시의 가시적 효과보다도 실패시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美國 및 日本 등 先進國 뿐 아니라, 아세안이나 중국 등과 같은 開途國들과의 쌍무협상에 있어서도 부당한 통상압력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APEC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통합의 촉진은 단기적으로 구조조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재봉·유재원, 1993 참조)

韓國이 이러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내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면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아·태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아·태국가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주요논점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域內貿易自由化 및 貿易活性化

아·태경제협력의 비전, 즉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대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 ②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 ③ 보완적 무역자유화 (supplementary trade liberalization)
- ④ 무역활성화 (trade vitalization)

앞에서 언급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이나 EPG의 아·태경제공동체 구상은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U의 예에서와 같이 지역통합을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자유무역지대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공동체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를 포함하는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공동체의 실현은 암묵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연속적인 자유화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정해진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협력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에서의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APEC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⁶⁾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교역량의 40%를 점하는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세계무역질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C통합이 지역주의 심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아·태지역만의 자유무역 역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역내무역자유화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화를 최우선시하면서 지역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공동체나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아·태경제협력의 목표로는 적합치 않다고 할 수 있다.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무역자유화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임하는 회원국들의 입장조율, 그리고 다자간 협상결과에 따른 보완적 자유화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각국의 무역정책 및 행정규제의 조화를 통한 무역활성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태경제협력의 현실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政策協議體로서의 APEC

아·태경제협력의 목표가 경제공동체나 자유무역지대에 있지 않다고 할 때, APEC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합한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보완적 무역자유화나 무역활성화는 지역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EPG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기초한 지역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및 무역활성화와 함께 균형적 사회간접자본 제공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APEC의 최소한의 기구화 및

-
- 6) 한국은 NAFTA가입을 통하여 무역마찰 해소 및 섬유,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수입증가와 함께 농업 및 서비스 등 경쟁력저위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Park and Yoo, 1989 참조) 한편, 한국의 NAFTA가입은 여타 아시아국가들에게 무역전환효과를 초래함과 함께 NAFTA 동시가입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The Group, 1993 참조)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APEC의 原型으로 지적되고 있는 OECD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는 회원국 상호간의 정책이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지역협력과는 궤를 달리 하면서도 세계무역질서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PEC 역시 지역협력체인면서도 배타적 경제블럭과는 달리 개방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의 경험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OECD의 경우에도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가간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가 협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OECD, 1987) 예를 들어 OECD 회원국들은 GATT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자본자유화에 관한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예외없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상품교역의 자유화 문제는 GATT에 일임하고 있으나, 이는 OECD 형성 당시 회원국들의 수량규제가 거의 철폐되어 관세인하만이 문제시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간의 협의나 자문은 상당부분 예외없는 자유화라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회원국들의 자유화 이행은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나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원국의 경제사정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해를 구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OECD의 성공적 발전은 교역의 자유화가 국제협력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APEC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협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된 보완적 무역자유화나 무역활성화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개방적 지역주의가 표방하는 일방적 자유화보다는 조건부 자유화의 방식이 역내무역자유화의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협약의 참여를 역외국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APEC은 무역자유화 문제나 사회간접자본 제공 뿐 아니라 노동력이동과 같이 GATT에서 다루기 힘든 지역협력문제나 회원국

들의 거시경제정책 협조를 포괄하는 정책협의체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2. 政策方向 및 戰略

아·태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이 위와 같이 지역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협조의 강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세부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다자간 협력(WTO)과 지역협력(APEC)간의 관계
- ② 우선 협력분야의 선정
- ③ 협상력 제고를 위한 연계
- ④ 소지역주의 협력에의 참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기능에 기초한 지역통합의 촉진에 초점을 두면서 협력과제나 무역자유화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쌍무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한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多者主義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안별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多者主義 優先原則 確立

韓國은 다자협력, 지역협력, 그리고 쌍무협력이 상호대체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협상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일정한 원칙이 없는 채로 다자협상과 쌍무협상을 병행하고,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분명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다자간 협상결과를 우선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호막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역내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역협력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보완적·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WTO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이나·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과 같은 문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漸進的·實質的 地域協力 推進

韓國은 APEC 중심의 경제협력 논의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아세안, 중국 등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表 5>에는 주요 협력과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우호적, 중립적, 비우호적이라는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보았다.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역내 무역자유화에서는 ASEAN이나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분야가 많다. 한편 개도국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무역활성화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韓國은 역내무역자유화를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동일시하는 개도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무역활성화를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선진국의 관심사인 역내무역자유화의 실질적 진척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투자협정이나 표준조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공동관심사를 협력과제로 부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역내무역자유화를 원만히 추진하려면 일본 및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NAFTA 및 AFTA 등 역내경제블럭이 배타적 보호주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表 5〉亞·太經濟協力 主要課題에 대한 會員國들의 立場

과 제	한국	미국(NAFTA)	일본	ASEAN	중국	호주·뉴질랜드
사회간접자본 투자	○	△	○	○	○	△
무역활성화	○	△	○	○	○	○
무역자유화						
관세인하	△	○	○	×	×	△
투자협정	○	○	○	△	△	○
표준조화	○	○	○	△	△	○
분쟁해결절차	△	○	△	×	×	△
경쟁정책	△	○	△	×	×	○
환경정책	△	○	○	×	×	○
지역통합	○	△	○	△	○	○

註 : ○ - 호의적; △ - 중립적; × - 비호의적.

協商力 提高를 위한 事案別 連繫

韓國은 지역협력의 과제 및 추진속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APEC내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방안, 또는 사안별로 협력대상국들을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태회원국들의 이질성과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表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ASEAN이나 중국과는 입장이 상이하며, 오히려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연계를 공식화할 경우 북미국가들과의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본의 무역수지흑자 해소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곤란하여질 수 있다.

한편 NAFTA나 AFTA에 속하지 않는 중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한국 및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만이나 홍콩은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이해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多者主義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실익에 따라 사안별로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본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開放的 地域協力 指向

한국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순서의 위계질서를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우위를 두어야 하며, 일부국가들과의 小地域主義的 協力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 EAEC) 가입문제의 경우, ASEAN국가들의 주도속에서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자기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치 않다. NAFTA 가입문제 역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뿐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역학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소지역협력 참여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선택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좁혀 놓을 경우, 여타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경제협의체에 대한 가입을 유보하는 대가로 한국은 APEC에서의 다자간 협상이나 쌍무협상에서 NAFTA국가들에 대해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은 지역협력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협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일본 및 중국,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경제협력의 추진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한국은 국제기구나 여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지역협력과의 갈등소지를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結 論

UR협상의 타결은 亞·太經濟協力の 분명한 목표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주의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지지세력이 될 WTO체제의 출범이 지역협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지역협력은 WTO 체제로 대변되는 세계주의를 수용하면서 다자간 협력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보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무역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NAFTA국가들은 UR협상에 이은 추가적 역내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UR협상의 타결로 域內貿易自由化 논의가 일당락되기 보다는 당분간 지역협력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本 報告書는 역내무역자유화가 향후 아·태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무역자유화 및 무역활성화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발전단계 및 산업구조의 차이는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획기적 무역자유화를 가로막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태협력이 지향하는 보다 긴밀한 지역통합을 위해서 역내무역자유화가 주요과제중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前수상이 2008년까지는 ASEAN, 한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NAFTA, 칠레간에 太平洋自由貿易地帶가 형성될 것이며, 日本 및 中國은 2015년에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Economist, 1993. 9 참조) ASEAN의 경우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동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실현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은 아·태지역에서의 추가적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일 공산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의 무역체제가 수렴함에 따라 자유무역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UR이후 域內貿易自由化의 課題를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보완적 추진, 무역활성화의 기반 조성, 그리고 신흥상분야에서의 공동의견조율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회원국들의 이해가 조화되기 쉬운 분야로부터 선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UR협상 결과를 지역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교역장벽의 추가적 인하가 필요하다. 그 일차적 대상은 역내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자유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UR TRIMs 협정보다 진일보한 亞·太投資協定(APIC)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UR협상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이 전반적 관세율이나 부문별 보호수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역내무역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표준조화 및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준조화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원국간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 시험검사 및 인증,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역내경제블럭의 원산지 규정상의 공정성을 포함하여 무역정책전반에 대한 정례적 검토, 그리고 역외 경제블럭과의 공식적 협의창구 개설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차기 다자간 협상의 새로운 협상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경쟁정책이나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역내회원국의 시각이나 제도정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자간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나 제도의 조화를 위한 상호인정, 협의 및 정보교환 등에서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다자간 협상을 대비한 공동의견의 조율이 시급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域內貿易自由化의 推進形態로 일방적 자유화,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조건부 자유화 등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협력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개방적 지역주의가 무임승차문제 및 일부 회원국에 의한 지연가능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약점

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가 표방하는 무조건적 최혜국원칙보다는 조건부 자유화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의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협약에 대한 역외국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와 GATT차원의 자유화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개도국들의 구조조정 부담을 고려할 때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 및 戰略的 選擇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아·태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이 경제적 실익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APEC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협력과제의 질적 향상과 함께 점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다자간 협력, 지역협력, 그리고 쌍무협력을 병행함에 있어 다자간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분명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WTO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지역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이나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과 같은 문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APEC 중심의 경제협력논의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아세안, 중국 등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도국의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문제를 주요 협력과제로 인정하는 동시에 시범적으로 투자협정체결이나 표준조화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보완적 추진 및 무역활성화의 기반조성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은 협상력의 제고를 위하여 多者主義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별도의 협의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

략과도 상충된다고 하겠다.

넷째, 한국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우위를 두어야 하며, 일부국가들과의 小地域主義的 協力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소지역협력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東北亞經濟協力과 같이 지역협력과 보완성이 뚜렷한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태경제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의 가속화는 생산의 世界化 현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각종 관행, 제도 및 법체제의 國際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역내무역자유화가 국내시장의 지속적·추가적 개방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이 재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노재봉·유재원,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대의 아·태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3.
- 김상겸, 『NAFTA의 출범과 미국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 비교』, 정책연구 93-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김완순,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과 GATT,” 고려대학교, 1993.
- 김인철, 『UR이후 세계관세율 개편 전망과 한국의 수출효과 분석』, 재무부 관세국 연구용역사업, 1992.
- 김희주,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결성의 영향과 대응,” 산업연구원, 199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증보판, 정책연구 93-25, 1993.
- 신희택, “아·태투자협정,” APEC 정책세미나 (「APEC :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3. 11.
- 손찬현, “표준조화분야,” APEC 정책세미나 (「APEC :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3. 11.
- 이대근, 『세계경제론』, 도서출판 가치, 1993.
- 이상호, “아·태공동시장과 WORFTA의 단계별 형성,” 「WOR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전략」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3. 11.
- 이영선,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혼재,” 세계경제지평 94-02, 세계경제연구원, 1994.
- 장의태, “아·태자유무역지역(APFTA)의 형성과 한국경제,” 「WOR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전략」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3. 11.
- 채 욱, “분쟁해결절차분야,” APEC 정책세미나 (「APEC : 아·태경제

- 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1993. 11.
- 한용택, “UR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전략,”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8.
- 한홍렬, 『NA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9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Ministerial Meeting, “Summary Statement by Chairman,” Canberra, November 7, 1989.
- , “Joint Statement,” Seattle, November 17-19, 1993.
- Bergsten, C. Fred, “Background Paper for Fifth Meeting of the APEC Eminent Persons Group,” Kuala Lumpur, March 18-20, 1994.
- Bhagwati, Jagdish,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World Economy*, Vol. 15, No. 5, 1992, pp. 535-556.
- Dornbusch, Rudiger W. “The Dollar in the 1990s : Competitiveness and the Challenges of New Economic Blocs,” in *Monetary Policy Issues in the 1990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989.
- , “Policy Options for Freer Trade : The Case for Bilateralism,” in Robert Z. Lawrence and Charles L. Schultze, eds., *An American Trade Strategy: Options for the 1990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0.
- DRI,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Uruguay Round,” 1993.
- Elek, Andrew,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Policy Choices for the 1990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Vol. 6, No.1, 1992.
- Feketekuty, Geza, *The New Trade Agenda*, Group of Thirty, Washington, DC, 1993.
- Frankel, Jeffrey, “Is A Yen Bloc Forming in Pacific Asia?,” in *Finance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AMEX Bank Review Prize Essays*, edited by R. O'Brie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and Shang-Jin Wei, “Trade Blocs and Currency Blocs,” *NBER Working Paper No. 4335*, NBER, 1993.

- Goldwin, Ian, Odin Knudsen and Dominique van der Mensbrugge, *Trade Liberalization: Global Economic Implications*, OECD and the World Bank, 1993.
- The Group o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Towards 21st Century,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Options for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1993.
- Kojima, Kiyoshi,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1.
- Krugman, Paul R., "Is Bilateralism Bad?," in Elhana Helpman and Assaf Razin 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The MIT Press, 1991(a).
- , "The Move Toward Free Trade Zones," *Economic Review*,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November/December 1991(b).
- Lee, Kuan Yew, "News from a Time-capsule," *The Economist*, September 11-17, 1993.
- OECD, *Introduction to the OECD Codes of Liberalization*, 1987.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 The Trade Policy Forum, "Draft Asia-Pacific Investment Code," 1993.
- Park, Yung Chul and Jung-Ho Yoo, "More Free Trade Areas : A Korean Perspective," in Jeffrey Schott ed.,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 Schott, Jeffrey, J., *More Free Trade Area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 Young, Soogil, "Regional Integration: An East Asi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November 10-12, 1993.

附 錄

1. EPG 報告書의 提案
2. APEC TIF의 主要內容

1. EPG 報告書의 提案

〈貿易自由化〉

提案 1 : APEC 회원국들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및 강력한 GATT 체제가 각국 무역정책의 최고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¹⁾

- A. 1993년말까지 UR의 성공적 타결을 지지한다.
- B. APEC 각료회담시까지 UR의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이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새로운 자유화 제안을 내놓는다.²⁾
- C. 1995년말까지 차기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을 시작할 것을 UR협상의 협정문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GATT 체약국의 동의를 구한다.
- D. 차기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구상을 위하여 UR협상이 종료되는 즉시 GATT내에 자문그룹을 설치 운영할 것을 포함, 국제적인 협의를 주도한다.
- E. 새로운 다자간협상에서 지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강화할 것과 매년 모든 지역협정에 대한 검토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APEC 및 역내 소지역협정 (AFTA, ANZCERTA, NAFTA)의 검토를 자청한다.

1) 1993년 11월 EPG 보고서가 제출될 당시에는 아직 UR협상의 타결이 불확실하였다.

2) APEC국가들은 EC에 전자, 종이, 과학장비, 완구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비철금속·수산물 분야에서의 관세조화를 제안하였다.

提案 2 : APEC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바라면서, 亞·太經濟共同體의 건설을 위하여 GATT 원칙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A. 역내 자유무역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 B. 1996년에 목표년도 및 추진일정표를 정한다.
- C. 다자간 협상에서 이루어진 수준이상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하여 UR 협상에서 미진하였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D. 경쟁정책, 분쟁해결절차, 환경문제, 수출금융, 금융서비스, 외국인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국가무역, 부문별 관세인하 및 일치 등을 의제에 포함한다.

〈貿易活性化 프로그램〉

提案 3 : APEC은 역내 무역 및 투자의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하여 亞·太投資協定을 채택하여야 한다.

提案 4 : UR결과와 관계없이 APEC에서는 던켈 초안 또는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및 NAFTA)에 기초한 분쟁해결절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여야 한다.

提案 5 : APEC 회원국의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담당 각료와 실무자들은 정례적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

을 위하여 노력한다.

- A. 역내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지원
- B. 경제성장 촉진 및 역내불균형의 효율적 조정

提案 6 : APEC은 경쟁정책에 대한 기존 국제협력모형중의 하나를 채택하는 것을 일단계로 고려하여야 한다.

提案 7 : APEC은 통신 또는 항공안전 등 일부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상품표준의 상호인정 및 검사, 모니터링절차의 상호수용이라는 중기적 목표를 수용하여야 한다.

提案 8 : APEC 회원국들은 각국의 무역 및 환경정책이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GATT 협상 참여를 약속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준, 자료, 기술 및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提案 9 : APEC은 역내 소지역협정의 연례검토에서 원산지규정 문제를 거론하여야 한다. 동시에, APEC 회원국들은 원산지규정이 아·태지역이나 세계전체의 무역 및 협력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의 새로운 원천이 되지 않도록 즉각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提案 10 : 무역활성화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APEC 각료회의에서는 매년 개별사안들의 진행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技術協力〉

提案 11 : 고등교육, 교통 및 통신망, 그리고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하부구조 건설을 위하여 지역전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APEC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데 촉매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APEC의 制度化〉

提案 12 : APEC의 경제, 재무, 무역 및 산업관련 장관들은 향후 점진적으로 각료회의를 비롯한 APEC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提案 13 : 비공식 지도자회담(Informal Leadership Meeting)은 최소한 3년마다 개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위급 모임은 본 보고서에 담겨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용하고, 유지하며,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提案 14 : 사무국이 출범한지 3년이 경과한 후, APEC 회원국들은 실질적인 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여야 한다.

提案 15 : APEC은 현재와 같이 10개에 걸친 협력과제 수행에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 보다는 몇 개의 주요 지역현안에 연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APEC TIF의 主要内容

〈貿易投資委員會 設置〉

APEC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위원회의 보고는 고위실무자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를 거치도록 한다.

〈目的〉

- A. 다자간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APEC의 일관된 시각 및 공동 의견을 개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 B. 1. 무역자유화 및 확대 기회의 활용, 보다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재화·서비스·자본·기술 흐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 2. 세계 및 지역차원에서의 교역확대 및 강화, 그리고 GATT원칙하의 교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하여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일치를 도출한다.

〈活動領域〉

- A. APEC 회원국들과 국제경제환경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책현안
- B. 역내 재화, 서비스, 투자 및 기술 이동의 왜곡 및 장애요소

- C. 무역 및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래비용의 절감
- D. APEC의 협력과제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정책 문제
- E. 무역정책 개선, 무역장벽 확인 및 해결에 있어서 역내 기업부문의 기여 증대

1994년도에는 무역정책협약, 통관절차, 투자, 관세 데이터베이스 및 지침서 정비, 시장접근의 행정적 측면, 표준 및 일치, 중소기업, UR 후속 조치, EPG의 의제, 추가적 의제 검토 등 총 10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委員會 構成〉

위원회는 무역 및 경제분야의 정책실무자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산하에 상설 또는 비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계경제 94-01

UR이후 亞·太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1994年 6月 8日 印刷

1994年 6月 11日 發行

發行人 司空 壹

發 行 世 界 經 濟 研 究 院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印 刷 오름시스템(주) 273-7011

(정가 3,000원)

